

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2005. 12. 6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11월 21일 · 종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5년 11월 24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5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
제1차 재무건설위원회(2005. 12. 6)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김 광 우)

가. 개정이유

- 기금의 예치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서 구 금고로 변경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고, 기금운용관을 「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규칙」의 규정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기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하여 안정성을 제고함 (안 제2조제3항)
 - 기금예탁 기관을 금융기관에서 구 금고로 변경
- 기금운용관 변경 (안 제5조제2항)
 - 건설교통국장 → 토목과장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김 충 식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